

대학정보공시 지표관리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정보공시의 체계적 운영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정보공시 및 통계관리를 위해 대학정보공시 지표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② 대학정보공시 지표관리 위원회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입력부서”라 함은 정보공시 항목 내용을 각종 통계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는 행정 부서 및 각 센터를 말한다.

2. “입력담당자”라 함은 입력부서에서 정보공시 항목 및 각종 통계자료의 입력·확인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3. “확인자”라 함은 입력담당자가 입력·확인한 정보공시 항목 및 각종 통계자료를 최종 확인하고 결재하는 실/부/팀장 및 부서장을 말한다.

4. “총괄담당자”라 함은 각 부서에서 작성한 정보공시 및 통계자료를 확인하고, 외부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·관리하는 자를 말한다.

제4조(입력부서) ① 각 입력부서는 정보공시 및 각종 통계 조사 시 관련 내용을 성실히 조사하여 실적 누락 및 입력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② 입력 담당자는 업무 담당자이며, 소속 팀장과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각 입력부서는 정보공시 및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총괄담당자가 요청한 사항(자료 제출, 검증, 확인 등 제반 활동)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각 입력부서는 관리하고 있는 정보공시 항목 및 주요 지표의 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점검 및 결과 활용) ① 대학정보공시 지표관리 위원회는 현황 점검 등을 통해 각 입력부서의 통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, 그 결과를 성과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.

② 각종 대내외 감사 및 실태 점검을 통해 현저한 성과가 인정되는 자(또는 부서)에 대하여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재발방지 노력) 대학정보공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대학정보공시 오류 정보 정정 시 해당 입력담당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재발방지 개선안(별지서식)을 제출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22.11.23.]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서식1]

「대학정보공시 오류정정」에 따른 재발방지 개선안

항목 담당자	부서명	입력담당자	
		입력책임자	
오류항목	공시연도	정정요청항목	<u>항목명</u> ex) & 차-1. 등록금 현황
오류 입력 사유	<input type="checkbox"/> 누락·착오 입력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시지침 미숙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연계 오류 <input type="checkbox"/> 학과정보·여건변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시항목 정정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타 ()		
재발 방지 개선안			